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78회 임시회 (2025. 9. 1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검 토 보 고

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권 하 나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5-105
- 나. 제 출 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5년 8월 14일(목)
- 라. 위원회 회부일자: 2025년 8월 18일(월)

2. 제출사유

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조치에 따라 마포구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와 수탁기관에 대한 주기적 관리·감독 실시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운영에서 수당 지급대상 제외 조항 신설(안 제7조)
- 나. 위원회 구성·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위원 회피 강행 규정화(안 제8조)
- 다. 수탁기관 주기적 지도·감독(감사) 규정 의무화: 연 1회 이상(안 제18조)
- 라. 경과규정 마련(안 부칙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: 2025. 7. 10.~2025. 7. 30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
5. 검토보고

가. 개정목적

- 동 조례 개정안은 2025년 8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- 개정안은 「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」¹⁾에 따른 후속 조치임.

1)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(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-4666, 2023.12.20.)

19.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·책임성 강화

평가대상

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

- ③ 지자체장은 당해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·감독뿐만 아니라 감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·감독을 실시해야 하고,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함에도
- 서울 구로구·마포구는 수탁기관 지도·감독(감사)을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·감독 미흡

[표 18] 민간위탁 관련 규정 현황

구 분	수탁기관 선정심의위		③ 수탁기관 의무	④ 수탁기관 감사 의무화
	① 외부위원 비율 (과반수 이상)	② 자격요건 구체화		
서울 마포구				임의규정

- 권익위는 지자체장이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 지도·감독뿐 아니라 정기적 감사와 후속조치까지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음.
- 그러나 현행 조례는 “필요 시 감사·점검 가능”이라는 임의규정에 머물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.
- 구는 현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제도적 구속력이 떨어졌음.
- 따라서 이번 개정은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및 주기적 점검의 법제화를 목적으로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위원 수당 지급대상 제외 규정 신설(제7조제5항)

- 공무원이 직무 관련 참석하거나, 구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 수당 지급에서 제외함.
-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보상 제외를 통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.

현행	개정안
제7조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) ① ~ ④ (생략)	제7조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	⑤ -----

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u>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----- -----<u>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 <u>1.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</u> <u>2. 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</u>
--	---

○ **위원 회피 의무화(제8조제3항)**

- 기존 “회피할 수 있다”를 “회피하여야 한다”로 강화함.

현행	개정안
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·② (생략)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<u>회피</u> 할 수 있다.	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<u>회피</u> <u>하여야 한다.</u>

○ **수탁기관 관리·감독 강화(제18조)**

- 매년 1회 이상 지도·점검 의무화 및 서류·시설 검사 가능 근거 신설함.
- 시정요구 절차 명문화 및 감사 관련 문구 정비함.

- 이를 통해 수탁기관의 사업 집행의 적정성, 재정 운영의 투명성, 주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·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현행	개정안
제18조(지도·점검 등)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<u>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업무 지도·점검에 필요한 서류,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</u> <u><신 설></u>	제18조(지도·점검 등) ① ----- ----- <u>처리와 관련하여</u> -- <u>보고하게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 및 지도·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	② <u>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지도·점검에 필요한 서류,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.</u>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되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	③ ----- <u>제1항 및 제2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.
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	④ ----- <u>제3항</u> ----- ----- -----.
	⑤ ----- <u>관하여</u> <u>필요한</u> ----- -----.

○ 용어 명확화(제2조제1호)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“민간위탁”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, 규칙에 규정된 <u>구청장</u> 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 2. ~ 5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. 2. ~ 5. (현행과 같음)

○ 민간위탁 대상사무 문구 정비(제4조제1항)

현행	개정안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<u>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</u> 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 ② (생략)	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</u> 할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○ 수탁기관 선정 문구 정비(제11조)

현행	개정안
제11조(수탁기관 선정) ① 제10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<u>선정</u>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	제11조(수탁기관 선정) ① ----- ----- <u>선정할</u> ---- ----- --.
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<u>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</u> 에서 제10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.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
○ 경과규정 신설(부칙)

- ‘제18조제2항(정기 점검 의무)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’고 개정조례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부칙에 필요한 경과규정을 둬.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,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됨.
- 특히, 임의규정이던 지도·감독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전환한 점은 권익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.

- 다만, 조례 개정만으로는 관리·감독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. 실제 집행 과정에서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, 규정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.
- 따라서 향후 집행부는 전문성을 갖춘 점검 체계 마련, 외부 전문가 참여, 평가 지표 구체화 등을 통해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할 필요가 있음.

■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